

1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220호 1998. 6. 2.

주요 골자

- 가.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업무를 별도의 부령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그 내용중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
- 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는 5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금액의 변경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를 2년으로 완화하고 변경회수도 제한하지 아니함.
- 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를 외벽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건축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고자 함.
- 라.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물의 보수보강방안과 비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도록하여 사용가능주택은 재건축보다는 주택의 수명연장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이유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공포('98. 4. 30.)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경력수첩사본”을 “건설기술경력증사본”으로 하며 같은조 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자격취득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내지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영 제17조제1항 별표3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이 면제되는 자와 매입면제 대상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의 2서식에 의한 채권매입 대상 항목 일부면제 신청서를 당해 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 청구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입필증 청구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

해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의한 채권매입대상 항목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영 별표3의 부표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채권매입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

제13조의3(매입필증의 교부)

①채권을 매출하는 자는 채권의 매출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및 기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4. 매입목적과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징구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징구의무자”라 한다)

5.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장 및 영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장과 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매출점포”라 한다)

②매출점포는 매입필증발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생상황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매입자는 채권매입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의 4서식에 의한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당해 매출점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점포는 당해 매입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매입필증의 재발행)

①채권매입자가 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 5서식에 의한 매입필증 재발행 신청서에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에 의한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출점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에 의한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4호의8서식에 의한 매입필증 재발행대장에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련번호

2.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제13조의5(매입필증의 징구) ①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면허증·허가 또는 인가증등을 교부할 때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기 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3. 해외건설공사 도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계약 허가시에 그 허가금액을 기준으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 은행의 장이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다만, 공사대금의 수령시마다 수령 금액상당의 매입필증을 분할하여 징구할 수 있다.

②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에 의하여 소인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4호의10서식에 의한 채권매입필증 징구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매입의 목적

③매입필증 청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따로 편철보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채권매출자등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6(채권매입 대상자) ①채권의 매입대상자는 당해 면허·허가·인가등 또는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로 한다. 다만, 부동산 등기시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2. 상속시에는 상속인
 3.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의 이전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는 자
- ②1개의 면허·허가·인가 등 또는 등기·등록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신청인 전부를 채권매입대상자로 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중 1인이 채권매입면제 대상자인 때에는 신청인 전부에 대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자의 매입대상금액이나 그 공유지분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채권매입만을 면제한다.

제14조의4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단서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예치금액을 변경한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외벽내부를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며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 외벽면적 및 세대간 경계벽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파이프덕트·환기덕트 등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제2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급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 다만, 공급받은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1항 단서중 “제1호, 제3호, 제6호”를 “제6호,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중 “단지면적의 증가로”를 “단지면적의 증감으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제22조의6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등기명의회자, 도시계획상의 용도와 대지 및 주변환경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영 제4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당첨기간”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 기간을 말하되 당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제

외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안전진단의 신청등) ①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사본

2. 결합부위에 대한 현황사진

②영 제42조의4제4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조물의 보강방안과 사용가능 수명

2. 배관등 설비의 보수·보강방안

3. 안전진단에 대한 유지보수 방안

4. 건물의 가격·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삭제한다.

별표4 및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국민주택 채권매입 사무취급은 이를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주택조사)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조사표 및 항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u>재정경제원장관</u>에게 통보한다.</p> <p>②(생략)</p> <p>제8조(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p> <p>①영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이하 “등록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하고 있는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한다)의 자격증사본(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u>경력수첩사본</u>을 말한다) 및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 증명서. 이 경우 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한 후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납부실적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p>	<p>제6조(주택조사) ①----- ----- -----<u>재정경제부</u> <u>장관</u>-----.</p> <p>②(현행과 같음)</p> <p>제8조(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p> <p>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건설기술경력증사본</u>----- ----- -----</p>

현 행	개 정 안
<p>고용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하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술자격취득자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4.(생략)</p> <p>②~⑨(생략)</p> <p>⑩영 제9조의2제4항의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기술자격취득자가 변경된 경우</u> 3. (생략) <p><u>제11조의2(경영상태진단 등의 실시) ①영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의 경영상태진단의 실시에 관하여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을 준용한다.</u></p> <p>(신설)</p>	<p>-----</p> <p>-----</p> <p>-----</p> <p>-----</p> <p>3.~4.(현행과 같음)</p> <p>②~⑨(현행과 같음)</p> <p>⑩-----</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기술자격취득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u> 3. (현행과 같음) <p>(삭제)</p> <p><u>제13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영 제17조제1항 별표3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이 면제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매입면제 대상항목은 별표와 같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매입의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의 2서식에 의한 채권매입대상 항목 일부면제 신청서를 당해 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 징구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u></p>

현행	개정안
(신설)	<p><u>의하여 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24호의 3서식에 의한 채권매입대상 항목일부 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u></p> <p><u>제13조의2(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면제) 영 별표3의 부표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채권매입 면제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u></p>
(신설)	<p><u>제13조의3(매입필증의 교부)</u></p> <p><u>①채권을 매출하는 자는 채권의 매출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채권의 번호 및 기호</u> <u>2. 매입금액</u> <u>3. 매입자의 성명</u> <u>4. 매입목적과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청구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청구의무자”라 한다)</u> <u>5.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장 및 영 제15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장과 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매출점포”라 한다)</u> <p><u>②매출점포는 매입필증발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행상황을 비치하여야 한다.</u></p> <p><u>③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매입자</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는 채권매입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 24호의 서식에 의한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당해 매입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4(매입필증의 재발행)</p> <p>①채권매입자가 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의한 매입필증재발행 신청서에 매입필증 청구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에 의한 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출 점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매입필증 청구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미사용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에 의한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③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 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4호의 8서식에 의한 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련번호 2.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p>(신설)</p>	<p>제13조의5(매입필증의 청구) ①매입필증 청구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청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면허증·허가 또는 인가증 등

현행	개정안
<p>(신설)</p>	<p>을 교부할 때 매입필증을 청구한다.</p> <p>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기 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매입필증을 청구한다.</p> <p>3. 해외건설공사 도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계약 허가시에 그 허가금액을 기준으로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외국환 은행의 장이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다만, 공사대금의 수령서마다 수령금액상당의 매입필증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다.</p> <p>②매입필증 청구의무자가 매입필증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 9서식에 의하여 소인의 표시를 별지 제2호의 10서식에 의한 채권매입필증 청구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매입의 목적 <p>③매입필증 청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따로 편철 보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채권매출자 등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6(채권매입대상자의) ①채권의 매입대상자는 당해 면허·허가·인가 등 또는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로 한다. 다만, 부동산 등기시에는 다음 각호에</p>

현행	개정안
<p>제14조의4(청약예금) ①(생략)</p> <p>②청약예금의 이율 및 조성된 자금의 사용용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③~④(생략)</p> <p>제14조의5(입주자 저축의 변경등) ①(생략)</p> <p>1.~4.(생략)</p> <p>②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p>	<p>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 명의자</p> <p>2. 상속시에는 상속인</p> <p>3. 저당권설정시에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의 이전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는 자</p> <p>②1개의 면허·허가·인가 등 또는 등기·등록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신청인 전부를 채권 매입대상자로 한다.</p> <p>③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중 1인이 채권 매입 면제대상자인 때에는 신청인 전부에 대하여 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자의 매입대상금액이나 그 공유지분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채권매입만을 면제한다.</p> <p>제14조의4(청약예금) ① (생략)</p> <p>②----- -----재정경제부장관-----.</p> <p>③~④(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5(입주자 저축의 변경등) ①(현행과 같음)</p> <p>1.~4.(생략)</p> <p>②-----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p>

현 행	개 정 안
<p><u>금액의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 분양받으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u></p> <p>1.~2.(생략)</p> <p>3. <u>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5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5년)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u></p>	<p>택의 면적-----</p> <p>-----</p> <p>-----</p> <p>-----</p> <p>-----</p> <p>1.~2.(현행과 같음)</p> <p>3. -----2년(-----</p> <p>-----</p> <p>-----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예치금액을 변경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p>
<p>③~⑤ (생략)</p> <p>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 등) ① (생략)</p> <p>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p> <p>1. (생략)</p> <p>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p>	<p>③~⑤(현행과 같음)</p> <p>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u>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며</u>-----</p> <p>-----<u>경비실, 외벽면적 및 세대간 경계벽 등</u>-----</p> <p>-----<u>아니하는 파이프덕트·환기덕트 등</u>-----</p> <p>---제외한다.</p>
<p>③(생략)</p> <p>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②(생략)</p>	<p>③(현행과 같음)</p> <p>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제22조의6(감리자의 업무등) ①감리자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건축물의 중간검사 신청서</u></p> <p>3. (생략)</p> <p>②(생략)</p> <p>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①(생략)</p> <p>②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u>별지 제10호의 2서식</u>에 의한다.</p> <p>③~⑦(생략)</p> <p>⑧영 제42조 제3항제1호 다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해당첨기간”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첨기간을 말한다.</p> <p>⑨~⑪(생략)</p> <p>제32조의2(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진단 등)</p> <p>①법 제4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p>	<p><u>해당하는 사항의 변경</u></p> <p>②(현행과 같음)</p> <p>제22조의6(감리자의 업무등)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삭제)</u></p> <p>3.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는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도시계획상의 용도와 대지 및 주변환경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⑦(현행과 같음)</p> <p>⑧----- ----- -----말하되 당첨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p> <p>⑨~⑪(현행과 같음)</p> <p>제32조의2(안전진단의 신청등) ①법 제4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p>

현행	개정안
<p><u>법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u></p> <p>②<u>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진단 대상주택이 영 제4조의 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u></p> <p>③(생략)</p> <p><u>제32조의3(안전진단의 의뢰등) ①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물관리대장 사본</u> 2. <u>결함부위에 대한 현황사진</u> <p>②(삭제)</p> <p><u>제32조의4(안전진단 수수료) 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수수료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u></p>	<p><u>를 첨부하여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물대장 사본</u> 2. <u>결함부위에 대한 현황사진</u> <p>②<u>영 제42조의4 제4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구조물의 보강방안과 사용가능 수명</u> 2. <u>배관등 설비의 보수·보강방안</u> 3. <u>안전진단에 대한 유지보수 방안</u> 4. <u>건물의 가격·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u> <p>③(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13조의2 관련)

1. 공장용 건축물

가. 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 나. 범위 : (1) 공장
(2) 부속시설로서의 창고·사무실
(3) 종업원용 기숙사

2. 교육용 건축물

가. 대상 : 교육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나. 범위 : (1) 교사
(2) 사무실 및 부속시설
(3) 학생용 기숙사

3. 종교용 건축물

- 가. 대상 : (1) 교회
(2) 사찰
(3) 기타 종교용 건축물

- 나. 범위 : (1) 당해 종교용 건축물
(2)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 사무실, 관리사무실
(3) 85㎡이하의 소속 직원용 숙소·신도용 기숙사

4. 자선용 건축물

- 가. 대상 : (1)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2) 자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으로서의 건

축물

- 나. 범위 : (1) 당해 자선용 건축물
 (2)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5. 공익용 건축물

가. 대상 : 일반대중의 이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

- (1) 기념관·전시관
- (2) 공회당
- (3) 대피시설
- (4) 도서관
- (5) 동물원·식물원
- (6) 집회소
- (7) 체육시설(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가 건축하는 체육시설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 나. 범위 : (1) 당해 건축물
 (2)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6. 축산용 건축물

가. 대상 :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나. 범위 : (1) 당해 축산용 건축물
 (2) 부속시설

7. 농업용 건축물

가. 대상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나. 범위 : (1) 당해 농업용 건축물
 (2) 부속시설

국민주택채권 일부 면제자 및 면제항목의 범위

(제13조제1항 관련)

대 상 자	대상자의 범위	면 제 항 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1. 외국인 투자기업	1. 외국인 투자 및 외 자도입법에 관한 법 률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 투자기업	1. 업무용 건축물의 건 축허가 2. 업무용 부동산의 등 기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 입법에 관한 법률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 투자기업 등록을 증 명하는 서류
2. 금융기관	1. 한국은행법등 특별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의 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 협동조합·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및 그 시·군지부(지소 및 예금 취급소를 포함 한다) 3. 수산업 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수 산업 협동조합·수산 업협동조합중앙회 4. 축산업 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축 산업 협동조합·축산 업 협동조합중앙회	1. 담보증인 물건에 대 하여 채권 회수 목 적으로 경매를 실시 하였으나 경매가 불 가하여 이를 취득하 는 경우의 부동산 등기 2.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 산의 등기	1.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 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2.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 류

대 상 자	대상자의 범위	면 제 항 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한국 자원 재생 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1.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2.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언론기관	1.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 가. 일반, 특수 및 외국어 일간신문 나. 통신 다. 일반 및 주간신문 라. 잡지 2.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3.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	1.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2.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허가 또는 등기 목적물이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
5.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나 중소	1.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합병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1.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등기 2.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설립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2. 등기대상부동산이 합

대 상 자	대상자의 범위	면 제 항 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p>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자본금이 종전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법인의 설립에 따른 동기를 신청하는 자</p> <p>6. 재건축 조합 및 재개발 조합</p>	<p>한 회사</p> <p>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하는 자</p> <p>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대한 보전등기</p> <p>1. 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 명의로 대지를 보존 등기하는 경우</p> <p>2.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 명의로 대지를 보존 등기하는 경우</p>	<p>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p> <p>대지의 보존등기.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p> <p>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설립일의 전일 현재의 대차대조표·감정평가서 및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서</p>

